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513호, 제8514호, 제8515호, 제8516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의견	4
2. 개별 법률별 검토의견	8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2) 「대기환경보전법」	12
3) 「물환경보전법」	16
4) 「소음·진동관리법」	20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7일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물환경보전법」)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

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9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소음·진동관리법」) 현행법은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호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1)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²⁾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개정안 주요 내용]

연번	법률안	대상 업종	개정 내용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제1항제4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현행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개정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기타 입법례에서는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기술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미달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연번	법률안	대상 업종	개정 내용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6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현행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개정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의9제1항제5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현행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개정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조제7호)	확인검사 대행자	현행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개정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채구성 (2023. 6. 1, 법제처 보도자료)

행정규제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규제기본법」³⁾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4), 「골재채취법」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6)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소상공인 등이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제재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함.

-
- 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입법례]

연 번	법 률 (제재처분 유예 근거 규정)	대 상 업 종 (소상공인 등에 한함)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단서	건설사업자
2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	골재채취업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	지적측량업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	금융상품판매업자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	국가유산수리업자등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	주택임대관리업자
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	부동산개발업자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소방시설공사업자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	안전진단전문기관
10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전기공사업자
1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	정보통신공사업자
12	「주택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7호 단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1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	해양조사·정보업자

5. ~ 9. (생략) ② (생략)	<u>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현행법⁷⁾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③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④ 시설·장비 및 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술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동법 제34조제1항8)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법정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고의적 사유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⁹⁾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중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인력·자본 등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¹⁰⁾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기타 입법례에서는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기술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미달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10) 참고로, 구체적 제재처분기준을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면, 현재도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현행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가 아닌 경고처분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¹¹⁾에 따라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게 되므로, 동 개정안에서 별도 적용례를 규정하는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11)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배출시설 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3. ----- -----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

4. ~ 7. (생략) ② (생략)	<u>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현행법¹²⁾에서는 배출시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하위

1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②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하게 하는 등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법정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고의적 사유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¹³⁾로 인하여 배출시설 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3)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기타 입법례에서는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기술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미달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¹⁴⁾에 따라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게 되므로, 동 개정안에서 별도 적용례를 규정하는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14)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3)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9 제1항제5호 단서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u><단서 신설></u>	5. -----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 7. (생략)	는 예외로 한다.
②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9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15)에 따르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¹⁶⁾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④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동법 제38조의6제1항¹⁷⁾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15)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현행법 제38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17)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못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그런데 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법정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고의적 사유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¹⁹⁾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중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인력·자본 등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8) 제재처분 기준을 정한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 따르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등록 취소임.

19)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기타 입법례에서는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기술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미달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²⁰⁾에 따라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게 되므로, 동 개정안에서 별도 적용례를 규정하는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20)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4)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검사대행자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호 단서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등록취소 등)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7. -----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자격자의 사망·실종·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생략)	8.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법²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행차에 대한 수시 점검 결과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운행차의 개선 결과를 확인받아야 함.

21)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확인검사대행자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거나 ②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법정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고의적 사유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²²⁾ 확인검사대행자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²³⁾에 따라 ‘법령등을 위반한 행

2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기타 입법례에서는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기술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미달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23)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게 되므로, 동 개정안에서 별도 적용례를 규정하는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